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1.

발 의 자 : 박상혁·백혜련·정준호
이강일·이연희·김주영
이해식·허영·조승래
박민규·노종면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·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채권자를 파악할 법적 수단이 없어 발행인과 사채권자 간 협의나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3항).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7조제3항 중 “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 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,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상법」 제232조·제439조 및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
2. 「상법」 제491조에 따라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
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
4.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7조(소유자명세) ①·② (생략) ③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무기명식(無記名式) 주식등의 발행인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,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이 필요하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	제37조(소유자명세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----- ----- ----- -----. 1. 「상법」 제232조·제439조 및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의제출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2. 「상법」 제491조에 따라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

<u><신 설></u>	<u>으로 전환되는 경우</u>
	<u>4.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이 다른</u>
	<u>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</u>
	<u>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</u>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